

# 연구윤리센터 규정

2015. 9. 18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
2. 생명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
3.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
4.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수행
5.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처장이 겸직한다.

-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행정인력) 센터에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연구처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재무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.

-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7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8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센터의 경비는 본교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

연구윤리센터 규정

제9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5. 9. 18. 제정)

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